

법령번역센터 국제 컨퍼런스

“법령번역의 포용성 향상을 위한 전략적 과제”

약 200여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각국의 법령번역 현황과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현황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의 발전 방향을 고찰해볼 수 있었고, 나아가 우리의 선진화된 법을 타국에 보다 효율적으로 전수하기 위한 접점으로서의 법령번역의 중요성에 대하여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김현희(한국법제연구원 법령번역센터 전문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은 2018년 12월 18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에서 “법령번역의 포용성 향상을 위한 전략적 과제”를 주제로 법령번역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번역총국 및 아시아, 영미유럽 주요국의 법령번역 품질향상 경험을 공유하고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이용한 번역의 전망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이 개회사로 컨퍼런스의 문을 열었으며, 김외숙 법제처장과 정우용 코이카 이사의 축사가 이어졌다.

세션 시작에 앞서 클라우스 미어-코이켄 EU 집행위원회 번역국장이 “법령번역의 품질 향상과 영문스타일 가이드”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였다. EU 집행위원회의 법령번역 경험을 중심으로 번역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번역총국의 노력이 소개되었다. 미어-코이켄 국장은 번역총국이 총 2,300명의 상근 직원을 두고 있고 연간 번역 페이지수가 2백만에 달한다고 언급하며, 거대한 규모의 번역인원을 관리하고 번역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고품질, 명확성, 고객 만족성을 핵심으로 한 강령을 두고, 품질이란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여, 생산물만이 아닌 번역과정까지 포함한 총체적인 품질관리를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번역 과정 이전과 이후에까지 품질관리를 확대하고, 번역총국 내부 및 외부 번역담당자에게 엄격한 번역, 교정, 평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최첨단 번역툴과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며 피드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전문가, 산업계 및 학계와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있으며, 번역 분야별 교육 및 IT 기술 교육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어서, 번역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번역총국은 기관 간 스타일 가이드, 공동실무가이드, 영문스타일가이드 등 다양한 형태의 스타일 가이드를 두고 있으며 영문스타일가이드를 만들기 위해 영문 스타일 가이드 위원회가 연간 5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하였다.

본회의는 총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법령번역과 경험 공유: 아시아”, “법령번역과 경험 공유: 영미·유럽”, “법령번역과 시번역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법령번역과 포용성 향상을 위한 과제”를 제목으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제1세션에서는 아시아의 법령번역 경험이 공유되었다. 첫 발표는 나고야대학의 요시하루 마쓰우라 교수가 “일본 법령번역에서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경험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하였다. 마쓰우라 교수가 참여하고 있는 일본의 법령번역사업에서 품질 관리 및 제고를 위하여 기울이고 있는 노력에 대해 소개하였다. 연간 번역실행계획, 법령번역 가이드라인, 번역사전, 문서형식정의 (DTD), 이중언어 문맥 속 키워드 검색 등이 주 내용을 이루었다. 가이드라인 내용의 예로 보여준 “Act”와 “Law”의 사용법 등은 법령번역센터의 법률 용어 현안들과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있었다. 문맥 속 키워드 검색은 키워드가 들어간 문장 목록을 보여줌으로써 사용자가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고 있었다. 일본 법령번역의 향후 과제로서 정치적인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와, 예산 인력 부분에 있어서의 과제 등이 언급되었다.

두 번째 발표는 대만 법률정보연구소의 에이미 휴이-링 쉬 교수가 “글로벌 법제 발전을 위한 대만 법령번역의 과제 및 전망”을 주제로 진행하였다. 대만의 법률정보연구소는 인적교류를 통한 유비쿼터스 정보를 구축하고 있으며 문맥 속 법령의 국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일본, 한국, 대만의 법령 표준번역사전 컨소시엄을 소개하며 정부부처가 번역한 법령들을 수집하여 용어 및 표현의 표준 번역을 만들고 있는 사업을 소개했다. 다국어 법령 텍스트와 표준번역사전, 법령의 문맥상 정보를 공유하는 등 범아시아적 품질개선 노력을 소개했다. 또한 트라도스 번역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번역 과정을 설명하였다.

제2세션에서는 영미·유럽권의 법령번역 경험이 공유되었다. 먼저 동의대학교의 류성진 교수가 “미국의 쉬운 공공언어 사용하기와 법령번역”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미국의 Plain Writing Act of 2010의 목적과 주요 용어들의 정의 및 내용에 대해 소개하고 동 법이 관련 정부 기관들에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이어, 동 법에 따른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예시와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포르투갈의 법령번역 및 법제 품질향상”에 대하여 리스본 대학의 후이 런세이루 교수가 발표하였다. 포르투갈의 법령 번역 문제에 대하여 유럽연합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법령 번역 및 법령 입안 기준의 문제와 품질 향상을 위한 과제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EU의 문서들은 모든 언어 버전이 공식 버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다양한 언어버전 사이의 통일성, 의미의 정확성 및 법률적 정확성이 높은 수준으로 요구되며 법률과 언어를 모두 전공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에 비해 법학과 포르투갈어 번역에 모두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찾기가 힘들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EU 회원국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각국 법령입안 기준과 관행이 혼합된 형태로서의 EU 법령은 그 입안 기준과 방식이 회원국과 상이할 수밖에 없는데, 이 때 번호 매기기, 표제, 위임조항 등에서 일치하지 않는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고, 이러한 차이에서 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EU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U는 회원국의 법령입안 기준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고 국내법 적용 과정에서 회원국의 법령 입안자가 EU 심사절차에 참여하고 유럽위원회와 소통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국가들이 함께 진행하고 있는 공동 법령 입안 연구 프로젝트를 소개하였다.

제3세션에서는 법령번역과 시번역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첫 번째 발표는 서던캘리포니아 대학의 아나 파진다 교수가 “시를 활용한 법령번역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진행하였다. 파진다 교수는 캐나다의 영어-불어 판례 번역을 위해 기계번역 프로그램을 개발한 프로젝트를 소개하였다. 높은 번역수요를 따라가기 위해 인간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먼저 1차적으로 기계번역을 통해 빠른 번역을 우선 제공하고, 인간의 교정을 통해 정확한 번역으로 추후에 대체하는 판례 번역 제공 방식을 설명하였다.

두 번째 발표는 광운대학교의 이일재 교수가 “포괄적 번역품질관리를 위한 협업, 실시간, 유비쿼터스 기계번역 제작 프로세스”를 주제로 진행하였으며 기계번역을 진행할 때 프로젝트매니저, 시전/사후 감수자, 교정자, 교열자, 검토자 등의 역할을 설명하였다. 각 작업자의 작업 흐름을 실제 작업창을 예시로 들어 상세하게 보여주었다. 최적의 번역품질 관리를 위해서 따라야 할 원칙으로서, 인적 자원들 간 협력할 것, 즉각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실시간으로 운영할 것,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기기를 통해 어디에서든 작업이 가능할 것을 강조하며 번역의 일관성은 적절한 기계번역 시스템과 기술 소프트웨어의 지원을 통해 얻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세션에서는 법령번역의 포용성 향상을 위한 과제가 제시되었다. 코이카의 김수진 연구원이 “영문법령과 ODA협력 및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김수진 연구원은 개도국 법제행정 역량강화 및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기반으로 한국 법제행정 ODA를 설명하였다. 최근 3년간 동남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추진된 법제행정 연수사업을 설명하였다. 한국의 법제기반 민주주의 구축 경험을 개도국에 전수해줌으로써 개도국 법제도 발전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법령번역의 포용성을 실현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향후 법제행정관련 ODA사업 운영시 한국 법령번역본의 다양한 접목 및 활용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약 200여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각국의 법령번역 현황과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법령번역의 현황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의 발전 방향을 고찰해볼 수 있었고, 나아가 우리의 선진화된 법을 타국에 보다 효율적으로 전수하기 위한 접점으로서의 법령번역의 중요성에 대하여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